



Contents

- 2 **여는시** | 회원글 中
- 3 **소식지 안내** | 목차와 기관현황
- 4 **신입직원 인사** | 오지현 사회복지사
- 5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가다** | 컨퍼런스 소식
- 8 **컨퍼런스 경험** | 또 다른 경험 · 백민지
- 9 **이동 PC수리점의 모습**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 10 **사진 갤러리** | 센터 활동사진
- 14 **사업안내 및 모집** | 프로그램안내 / 이용자 모집
- 17 **2015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
- 19 **2015년 달라지는 활동지원** |
- 23 **감사의 글** | 후원안내 / 명단
- 23 **에필로그** | 편집후기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With Us” spring Vol.9

- **발행일** 2015년 4월6일 ● **발행인** 문선우 ● **발행처**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기획** 이지형 **전화** 042-621-5857~8 **팩스** 042-621-3883 **홈페이지** www.ddil.or.kr
- **인쇄처** 한샘

첫 출근을 하면서



오 지 현 사회복지사

직원글

처음 하는 첫 출근에 긴장도 되면서 한편으론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학교에서만 강의로 들었던 용어들과 문서들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듣고 작업하고 등등 정말로 내가 일하고 있구나 하고 현실감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첫 직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립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 II.이란 낯설은 용어를 알게 되면서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 조금 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 27일에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직원 직무연수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연수와 다른 센터 직원들과의 만남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연수 교육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타인의 생각을 받아드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생각을 들어보며, 많은 변화를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만이 아닌 다른 센터들과의 생각 공유, 자료 공유 등을 통해 더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한 범위 내에서보다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장애인자립 생활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도 무엇에 관한 건지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어서 값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일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자립생활에 대한 지식보다 더 깊고 세심하게 알 수 있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가다

금번 자립생활8주년 II컨퍼런스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9개 센터 약 200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벌써 본 회의장은 짙찬 상태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II컨퍼런스 슬로건인 세상을 바꾸는 장애인 당사자의 힘! 담대한 실천적 자립생활 운동으로 깨어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 이로 회의를 이어져 간 가운데 2번째 소 주제로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회의에서는 최종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인 수가 차등화를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반면, 정부에서는 “검토”의 입장 표현.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

보조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것이 바로 최종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오는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확대되면 사각지대는 심각해져 가고 업무강도나 난이도, 기피도가 다른 이에 비해 높은 최종장애인은 활동보조인들에게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현재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연구되고 있으며 수가체계를 달리 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음. 장애인이 받는 급여의 내용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수가도 달리하는 방법을 병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매칭 시에 연령별, 성별 매칭이 매우 어렵다. 서비스 단가가

컨퍼런스 소식

저녁식사 후 시도별 정기지방 시간이 마련되어 각 지자체별 센터 대표들이 참가하여 공트, 퍼포먼스,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정기지방을 선보여 그 중 우리센터가 속한 대전장애인지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풍물놀이 가 1등을 하여 3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사진설명 : 대전장애인지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풍물놀이 사진 왼쪽부터 신인수 부문CIL 부소장, 김현영 대전IC대학장, 남성우 CIL 소장, 남인수 한밭CIL 소장, 천인수 서구CIL 소장〉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남자면서 중장년층인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여성 활동보조인이 남성 이용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해결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단가에 맞춰 최소한 약 9500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행법에서는 도서산간이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로 하고 특히 아동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보다는 부모의 품이 더 필요한 시기다.

자립생활세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하고, 평가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외 보조금 지원 규정, 운영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현실이며 또한 현재 전국 센터에서 500명을 체험홈을 통해 자립시킨 성과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운영기준이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적지위를 확실히 해야할 시점이며 또한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건비 지원기준, 소장자격기준 등의 필요성들을 도모했다. 한 페이지 정도 있는 운영기준

컨퍼런스 소식



기획비용을 잘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 의견도 나왔다.

둘째날 소분과회의에서 1분과 지자체의 II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토론을 듣게 되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속 센터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제 삼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속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로 장애인복지법상을 개정 복지시설 종류에 들어갈 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복지관과 대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료지지센터 등으로 명문화될 필요성 강조하였으며 복지부가 마련한 복지사업안내에 자립생활안내 지침에 센터 부분이 포괄적이나 사업 집행하

는 것에 애로점이 많고 무엇을 물어보아도 대답하기가 힘든 적이 많으며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인력채용기준, 운영비 집행기준 등의 기준마련이 필요함. 복지부의 운영관리 지침이 반드시 정리화할 필요를 언급하였다.

故구근호 활동가 추모 행진 및 II 선언문 낭독에 참여하였다.

여성프라자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이동하여 추모와 행진을 하였다. 여의도 공원 4번으로 전국의 센터 및 활동가 약 100여명이 함께 모여 故 구근호 활동가의 추모 결의 낭독문을 외쳤고 여의도공원 자전거도로를 따라 추모행진을 하며 고인이 사고를 당한 현장까지 이동한 가운데, 추모행진 과정에서 주최 측과 경찰은 잠사회관 부근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II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장애인계에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10여년동안 많은 일과 성과를 내비쳐, 지역내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가능케 정책 및 서비스를 제도화시켰다.

이번 II 컨퍼런스의 슬로건인 '세상을 바꾸는 장애인당사자의 힘! 담대한 실천적 자립생활 운동으로 깨어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의 내세움 같이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여 적극적인 자세로 중증장애인의 참된 자립생활,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사명을 되새기는 동시에 건강한 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가겠다.

컨퍼런스 소식

또 다른 경험 -컨퍼런스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대덕구 자립센터에서 매년 열리는 자립생활 킴퍼런스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처음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몰라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궁금하기도 하여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다.

전국의 자립센터가 모인 컨퍼런스여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서인지 그 만큼 다양한 휠체어들 보였고 그것들을 보고 눈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매순간 두리번거렸다.

서울에서 해마다 열리는 자립생활 킴퍼런스에서는 여러 센터들이 모여 회의와 강의를 하는데 좁은 장소에 비해 참석자 수는 많아 다양한 토론에 참석하기 어려웠다. 그 중 한 토론에 참석하였는데 그 토론의 전반적인 내용이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 현재 시설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원래 자립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못 들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적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좋았다.

둘째 날 오후에 故구근호활동가 추모행사도 했는데 길거리 행진 할 때 경찰과 의경들이 많이 나와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집회현장인 것 같았다.

자립생활 킴퍼런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 다음에 한 번 더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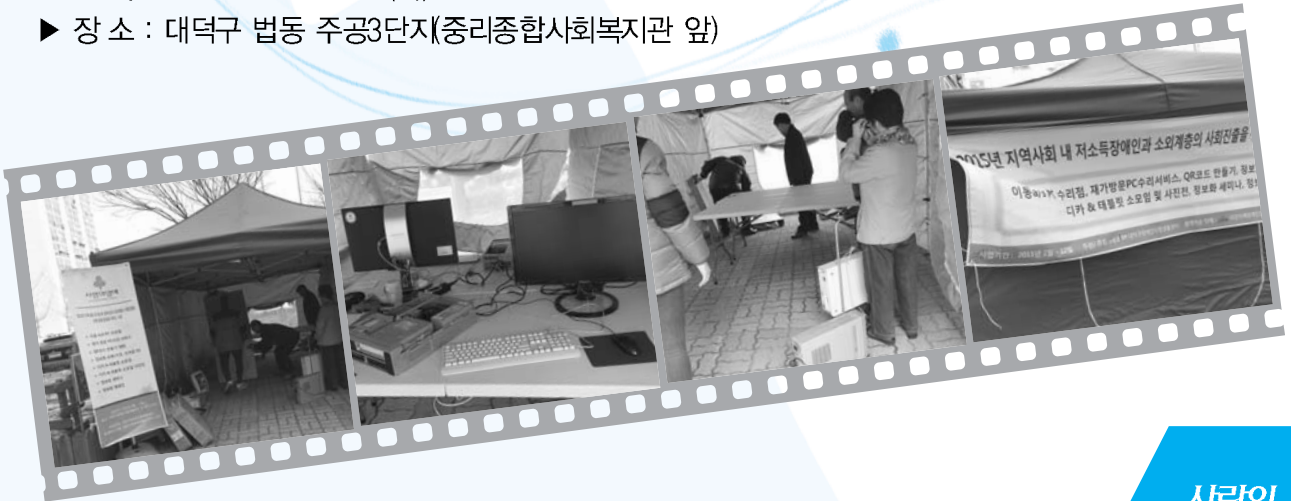
회원글
(백민지)



이동 PC 수리점 모습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인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사회진출을 위한 토털 정보화 서비스 사업 - 부 제 : “e 세상속으로” 프로그램 중 매월 1회 이동하는 컴퓨터 수리점 실시 함.

- ▶ 일 시 : 2015년 02월 26일(목) 13:00 ~ 16:00
- ▶ 장 소 : 대덕구 법동 주공3단지(중리종합사회복지관 앞)



사랑의
열매

- ▶ 일 시 : 2015년 03월 30일(월) 13:00~16:00
- ▶ 장 소 : 대덕구 오정동 양지마을 아파트



▼ 2015 제8회 I컨퍼런스



◀ 420대회



▼ 스포츠 자조 모임



◀ 제2회 정기총회



▼ 지적/자폐성 자립생활 기술훈련



◀ 직원 워크숍



▼ 동료상담 양성교육



▼ 권익옹호 활동



▲ 너나들이 정기총회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회의

사업안내 및 모집

■ 사업/프로그램명 : 동료상담양성과정

- 대상 인원: 대전시 등록된 장애인 3~4명 (대덕구 거주 및 중증장애인 우선)
- 장소: 대전광역시 관내 또는 숙식이 가능한 곳
- 목적: 중증장애인이 사회와 가정에서 억압과 차별 또는 고통을 받으며 자기의 삶을 구속시킨 것을 탈피하며, 감정해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과 개인에 임파워먼트를 향상시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끌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한다.

■ 사업/프로그램명 : 레저자조모임

- 대상 지역: 대전광역시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대덕구 거주 우선)
- 횟수: 매월 2회 이상
- 인원: 스포츠에 관심있는 장애인 6명 이상 (총원기능)
- 장소: 대전광역시 관내
- 내용: 지역사회 내(시설거주 및 재가)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들의 여가 활동과 개별적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런닝맨」라는 레저스포츠 자조모임을 결성함.

■ 사업/프로그램명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 대상 지역: 대전광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 횟수: 2회 이상
- 장소: 대전시청, 서대전 시민광장 등
- 목적: 지역사회에서 시민 및 학교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활동을 증진시키며, 장애인권및 감수성을 이해하도록 참여를 도모하여 장애와 비장애인이 장벽없는 사회통합을 힘쓰는데 목적으로 함.

■ 사업/프로그램명 : 자립생활기술훈련(근거리 ILP)

- 대상 지역: 대전광역시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대덕구 거주 우선)
- 횟수: 9회 이상
- 장소: 대전광역시 관내
- 목적: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 시설거주 및 재가 장애인에게 미션을 주어 수행하는 방식의 근거리 ILP훈련, 본인 욕구에 맞는 자립생활을 훈련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영역별 자립생활에 대한 역량강화

■ 사업/프로그램명 : 바리스타 교육

- 대상 지역 : 대전시 등록된 장애인 (대덕구 거주 우선)
- 기간 : 3월 ~ 5월 (3개월)
- 인원 : 바리스타에 관심있는 장애인 5명 이상 (총원가능)
- 장소 : 본 센터 교육실
- 내용 :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강화시켜주며, 자립생활기술훈련으로 바리스타를 배우고 학습하여 새로운 직업적 의식과 영역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함양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사업/프로그램명 : 디카&태블릿PC 소모임

- 대상 지역 : 대전광역시 등록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덕구 거주 우선)
- 횟수 : 3월 ~ 12월 (10개월)
- 인원 : 디카 및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에 관심있는 자
- 장소 : 대전광역시 관내
- 내용 :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강화시켜주며, 자립생활기술훈련으로 스마트폰과 디카등을 배우고 학습하여 새로운 직업적 의식과 영역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함양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사업/프로그램명 : 지역사회연구사업

- 대상 지역 : 대전광역시 지역 거리
- 횟수 : 5월 ~ 10월 (6개월)
- 인원 : 장애인 2명
- 장소 : 대전광역시 관내
- 내용 : 휠체어장애인및 지체장애인이 거리를 다니다가 보도블럭 불량이거나 경사각이 높거나 훼손된 곳을 촬영하고 모니터링을 하여 구청에 시정요구를 함.

■ 사업/프로그램명 : 이동지원서비스

- 대상 지역 : 대전광역시 전체 (대덕구 거주 우선)
- 기간 : 1월 ~ 12월 (연중)
- 방법 : 하루 전에 예약 및 긴급이동
- 내용 : 긴급이동지원, 프로그램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활동지원(이용자) 모집

- 신청기간 : 연중
- 이용대상 : 6세 이상 남녀(1~2급 장애인 포함)
- 이용시간 : 판정된 시간
- 서비스 내용 : 가사, 신변처리, 목욕, 이동지원 등
- 이용금 : 수급자 무료, 차상위, 일반은 복지부의 규정따름

활동지원(활동보조인) 모집

- 신청기간 : 매주 화요일
- 모집대상 : 18세 이상 남녀(경증 장애인 포함)
- 근무시간 : 시간제 근로
- 파견 : 소양의 교육시간 이수 후

노인돌봄(이용자)

- 신청기간 : 연중
- 모집대상 : 65세 이상 남녀(중풍 및 치매성 질환)
- 이용시간 : 주3회 / 3시간
- 파견 : 가사, 신변처리, 일상생활 보조
- 이용금 : 수급자 무료, 차상위, 일반은 복지부의 규정따름

노인돌봄(요양보호사)

- 신청기간 : 연중
- 모집대상 : 18세 이상 남녀(경요양보호사 2급이상)
- 근무시간 : 시간제 근로
- 파견 : 소양의 교육시간 이수 후

2015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사 업	2015년	사 업	2015년																
장애인등록 및 심사	장애인등록증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급여 - 단가 8,810원 (심야·공휴일 13,210원)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 기 간 : 21일 이내 - 기간연장 : 2회(60일)		활동지원교육기관 교육비수납 영수증발급 신설																
	장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 지원대상 : 심사부서 자료보완지사 자료보완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동글이)+바우처카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930,000원, 부부 1,488,000원 근로소득 공제 - 인당 월 52만원 기초급여(18~64세) - '14.7월~'15.3월 : 200,000원 - '15.3월~'16.4월 : 203,600원(추후공지)	지원	활동지원기관 중요사항 변경지정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지원기관 기타 변경사항의 신고 - 급여비용 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활동지원기관의 명칭 -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																
	부가급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60%;">부 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기 초</td> <td style="text-align: center;">18~64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80,00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차상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8~64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차상위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8~64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r> </tbody> </table>			구 분	부 가	기 초	18~64세	80,000	65세 이상	28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구 분	부 가																	
기 초	18~64세	80,000																	
	65세 이상	28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장애수당	지원단가 인상 - 기초 및 차상위 : 4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 20,000원(전년동)	장애인보조기구교부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사 업	2015년	사 업	201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p>지원대상 : 1~6급의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p> <p>- 2014년(장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p>	중증장애인 인턴제	<p>실시사업체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약 정기간은 최대 6개월 인턴기간 동안 월 약정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지원금의 최대한도 는 80만원</p> <p>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 월 고용 유지를 하면 추가적으로 월 65만원 씩 6개월간 390만원을 지급</p>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p>고속도로 할인 대상자에게 장애인복지카드 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 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조폐공사)</p> <p>-주민센터 신청 → 행복e음 → 도로공사 → 행복e음 → 조폐공사 → 신한카드 → 조폐공 사(카드발급) → 읍면동 → 카드배부</p> <p>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 장애인통합복지카 드만 제시하면 됨</p> <p>※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신규발 급 안함</p> <p>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p> <p>- 통합A형(신용체크기능 없음) : 4,000원</p> <p>- 통합B형(신용체크기능 있음) : 무료</p>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p>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들을 위한 활동지원 신청자격도 오는 6월부터 3급까지 확대</p>
언어발달 지원	<p>제공기관</p> <p>-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당해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단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1년이상 3년 이내 까지 지정가능)</p>	건강한 삶 위해 의료비 부담	<p>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서도 4대 중증질환,3 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을 경감시킬 방침</p> <p>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p>
	<p>결제수단</p> <p>- 결제단말기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폰(동글이) +바우처카드</p>	장애인 일자리 지원	<p>일반형 일자리</p> <p>- 월 보수 1,167천원, 월 운영비 115천원</p> <p>장애인복지일자리</p> <p>- 월 보수 313천원, 월 운영비 14천원</p> <p>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p> <p>-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p> <p>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p> <p>- 월 보수 731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p>

장애인활동지원 주요 내용 비교표

목 차	구 분	2014년 2월	2015년 2월
대 상 자 선 정	제외대상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를 포함	- 삭제
		- 6시간 이상 낮병동을 이용할 경우에도 입원으로 간주	- 삭제
	추가 급여 수습 요건	- 구체화	추가급여 수급요건 -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구체화	추가급여 가구구성원의 범위 기준 - 「민법」제779조 준용 · 추가급여 ①②③④⑤⑥에 공통 적용
		- 구체화	추가급여 가구구성원의 범위 기준 - 주민등록상 수급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구성원 중 사실상 부재중인 자는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인정여부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준용
	활동 지원 급여량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1,010천원 · 2등급 810천원 · 3등급 610천원 · 4등급 410천원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1,040천원 · 2등급 834천원 · 3등급 628천원 · 4등급 422천원
- 추가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가구 2,341천원 ·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 가구 684천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 가구 171천원 · 출산가구 684천원 · 자립준비 171천원 · 학교생활 86천원 · 직장생활 342천원 · 보호자일시부재 171천원 · 최종중 수습자 가구 구성원의 학교· 직장생활 624천원		- 추가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가구 2,411천원 ·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 가구 705천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 가구 176천원 · 출산가구 705천원 · 자립준비 176천원 · 학교생활 89천원 · 직장생활 352천원 · 보호자일시부재 176천원 · 최종중 수습자 가구 구성원의 학교· 직장생활 643천원	

목 차	구 분	2014년 2월	2015년 2월																
대 상 자 선 정	수급 자격 심의 위원회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추가)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등)																
	결정 자료의 전송	- 전송가능 기한 :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전송가능 기한 : 매월 1일부터 말일 18:00시 까지 ※ 신규대상자에 한하여 전송 가능 기한 이후는 행복e음 당월생성 기능을 통해 처리 가능																
	건강보험 지원월한도액	- 월한도액 810천원	월한도액 834천원																
	건강보험료 조건표	- 2014년 건강보험료 조건표	2015년 건강보험료 조건표																
	개인 정보 보호	(추가)	업무관련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로 구분 -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안내																
활 동 지 원 금 여 및 금 여 비 용	활 동 보 조 금 여 비 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하는 경우</td> <td>8,550</td> </tr> <tr> <td>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td> <td>12,830</td> </tr> <tr> <td>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td> <td>12,830</td> </tr> </tbody> </table> <p>②및 ③의 경우에는 동일 대상자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실시간 결제에 한함</p>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하는 경우	8,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table border="1"> <thead> <tr> <th>분 류</th> <th>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하는 경우</td> <td>8,810</td> </tr> <tr> <td>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td> <td>13,210</td> </tr> <tr> <td>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td> <td>13,210</td> </tr> </tbody> </table> <p>예외 청구시에도 ②및 ③의 경우 적용 가능</p>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하는 경우	8,81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	13,210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하는 경우	8,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하는 경우	8,81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21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	13,210																		
원 거 리 교 통 비	<p>활동지원기관은 원거리교통비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대상 자 확정하여 정보개발원으로 정보 전송</p>	<p>활동지원기관은 원거리교통비 신청서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최종 승인</p>																	

목 차	구 분	2014년 2월								2015년 2월								
활동 지원 급여 및 급여 비용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구 분	본인 부담금	86 천원	171 천원	342 천원	624 천원	684 천원	2,341 천원	구 분	본인 부담금	89 천원	178 천원	352 천원	643 천원	705 천원	2,411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	-	-	-	-		
		전 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241만원 이하)	2%	1,700	3,400	6,800	12,400	13,600	46,800	50%이하 (241만원 이하)	2%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483만원 이하)	3%	2,500	5,100	10,200	18,700	20,500	70,200	100%이하 (483만원 이하)	3%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725만원 이하)	4%	3,400	6,800	13,600	24,900	27,300	93,600	150%이하 (725만원 이하)	4%	3,500	7,000	14,000	27,700	28,200	96,400			
150%초과 (725만원 이하)	5%	4,300	8,500	17,100	31,200	34,200	117,000	150%초과 (725만원 이하)	5%	4,400	8,800	17,600	32,100	35,300	120,500			
바우처 지급및이용	급여 결제	- ARS 결제								- 삭제 (결제 수단 제외)								
활동 지원 기관	인력 관리	(추가)								시행규칙 제17조(별표1)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명시								
	중요 사항 변경 지정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지원기관의 명칭 -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기타 변경 사항의 신고	- 급여비용 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활동지원기관의 명칭 (추가) - 활동지원의 대표자 (추가) - 급여비용 수령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활동 지원 인력 매칭	(추가)								- 이용자와 가정환경,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활동지원인력을 매칭하여야 함								

목 차	구 분	2014년 2월	2015년 2월
활동 지원 기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
	사업비 관리	구체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별도회계 구성 활동지원기관 수익범위 상세화 -전담인력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구체화
	이용자 부당 행위 처리	(추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상습적인 폭언, 성희롱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교육 강화 및 보고 의무
활동지원 교육기관	운영 관련	(추가)	교육비 수납 영수증 발급
기관평가		(추가)	활동지원기관 평가고시 반영

